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8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김진수 의원 (1명)

찬 성 자 : 여 명, 홍성룡, 이성배,
송아량, 박순규, 김소양,
김제리, 송명화, 박기열
의원 (9명)

1. 제안이유

- 물관리일원화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 등 변화된 물환경 관리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에서 지하수, 물재이용 등을 포함한 물순환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현행화를 위해 불필요한 대상사업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변경함(안 제2장, 제5조)

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 중 불필요한 사업 삭제(안 제11조제1항제6호, 안 제11조제1항제16호, 안 제11조제1항제23호)

다. 상위법령 인용조항 불일치 정비(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11조제1항제27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장 제목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한다

제5조 조 제목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제2항제1호 중 “빗물관리”를 “물순환 회복”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6호, 제16호, 제2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7호 중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빗물관리</u> 계획	제2장 <u>물순환 회복</u> --
제5조(<u>빗물관리</u> 기본계획)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u>빗물관리</u>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u>물순환 회복</u> ----) ① ----- ----- ----- <u>물순환 회복</u> -----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u>빗물관리</u>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1. <u>물순환 회복</u>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10조(저영향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영향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37조제1항제5호</u> 에 따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37조제1항제4호</u> 에 따른

<p>방재지구 2.~5.(생략)</p>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u>농어촌정비법</u>」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p> <p>7. ~ 15. (생략)</p> <p>16. 「<u>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 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7. ~ 22. (생략)</p> <p>23. 「<u>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u>」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p> <p>27. 「<u>공항시설법</u>」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4. ~ 44. (생략)</p> <p>② ~ ③ (생략)</p>	<p>방재지구 2.~5.(현행과 같음)</p> <p>제11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대상 등) ①(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삭제</u></p> <p>7. ~ 15. (현행과 같음)</p> <p>16. <u>삭제</u></p> <p>17. ~ 22. (현행과 같음)</p> <p>23. <u>삭제</u></p> <p>27. 「<u>공항시설법</u>」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4. ~ 4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